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가. 제·개정 이유

-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존 의무화 분야인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변경(안 제2조의2)
- 의료과정운영학교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